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536 호

2003 년 9 월 19 일 금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596호(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3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23호(담배소매인폐업공고)----- 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24호(담배소매인지정공고)----- 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25호(소유사실확인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운연동중로3-184호선도로개설공사))-- 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28호(분묘개장공고(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29호(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을위한공람공고)----- 1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30호(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인천논현2택지개발사업))--- 1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32호(노상적치물등의보관및처리에관한공고)----- 13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규	칙
---	---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9. 19.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96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별표1” 중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 제7호 “옴부즈맨 제도 운영”을 “정책자문위원 제도 운영”으로 하고

총무과의 분장사무중 “제44호 내지 제57호”를 “제45호 내지 제58호”로 하며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 각급 학교 지원에 관한 사무

같은 표의 자치행정과 분장사무중 제14호 “각급 학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제15호 내지 제49호”를 “제14호 내지 48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움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의 개정(2003.5.19)에 따라 분장사무의 명칭을 정확히 개정하고
 - 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서간의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하고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 주요골자
-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중 “움부즈맨 제도운영”을 “정책자문위원 제도운영”으로 조정(제8조관련 별표1)
 -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중 “각급 학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총무과로 사무로 조정(제8조관련 별표1)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23호

담배소매인폐업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폐업처리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 9.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제조담배소매업 휴폐업현황

순번	상호	소매인구분	폐업일자, 동	영업소주소
1	호산상회	일반소매인	03-08-02	고잔동 682번지 16호 (남동공단83블럭17롯데)
2	(주)한유통개나리점	일반소매인	03-08-02	구월동 279번지 6호
3	초원 슈퍼	일반소매인	03-08-05	간석동 913번지 4호
4	경기슈퍼	일반소매인	03-08-07	구월동 368번지 1호
5	도림주공마트	일반소매인	03-08-12	도림동 629번지 1호 주공상가 104호
6	영빈슈퍼	일반소매인	03-08-11	구월동 201번지 191호
7	에이원 상사	일반소매인	03-08-12	구월동 1174번지 1호
8	대영할인마트	일반소매인	03-08-12	구월동 3번지 76호
9	선경 슈퍼	일반소매인	03-08-13	간석동 154번지 3호
10	청운유통	일반소매인	03-08-18	간석동 37번지 31호
11	담배	일반소매인	03-08-19	구월동 23번지
12	은혜 분식	일반소매인	03-08-20	간석동 94번지 20호
13		일반소매인	03-08-20	고잔동 698번지 3호
14	문화 슈퍼	일반소매인	03-08-20	논현동 248번지 14호
15	인혜 슈퍼	일반소매인	03-08-25	구월동 1276번지 1호
16	구내식당	일반소매인	03-08-26	고잔동 733번지 2호
17	선용지업사	일반소매인	03-08-27	간석동 118번지 4호
18	원마트	일반소매인	03-08-28	논현동 557번지 5호
19	뽀뽀슈퍼	일반소매인	03-08-29	구월동 1090번지
20	용호슈퍼	일반소매인	03-08-29	만수동 111번지 34호
21		일반소매인	03-09-01	구월동 1303번지 20호
22		일반소매인	03-09-02	고잔동 138번지 8호
23	신세대마트	일반소매인	03-09-02	간석동 135번지 7호
24	연덕슈퍼	일반소매인	03-09-04	만수동 111번지 216호
25	롯데마트	일반소매인	03-09-04	만수동 25번지
26	서울식당	일반소매인	03-09-05	고잔동 640번지 8호 (남동공단71블럭9롯데)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24호

담배소매인지정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지정처리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 9.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제조담배소매업 지정현황

순번	상호	소매인구분	동	영업소주소	지정일
1	무궁화슈퍼	일반소매인	구월동	1181번지	03-08-04
2	낙원마트	일반소매인	간석동	88번지 19호	03-08-04
3	충남유류	일반소매인	간석동	470번지 4호	03-08-04
4	한윙홈나리점	일반소매인	구월동	279번지 6호	03-08-06
5	종원목재구내매점	구내소매인	고잔동	730번지 8호 1588-9L	03-08-06
6	(주)농림우리마트	구내소매인	만수동	1020번지	03-08-06
7	24시슈퍼	일반소매인	구월동	1162번지 41호	03-08-13
8	인천대공원 간이판매대2호매점	일반소매인	장수동	727번지	03-08-13
9	경기슈퍼	일반소매인	구월동	1279번지 1호	03-08-13
10	서강식당	일반소매인	고잔동	730번지 7호 남동공단158블럭8롯데	03-08-13
11	초원슈퍼	일반소매인	간석동	913번지 4호	03-08-13
12	보강구내식당	일반소매인	고잔동	650번지 2호 남동공단102블럭3롯데	03-08-13
13	에이원종합상사	일반소매인	구월동	1174번지 2호	03-08-19
14	도림주공마트	일반소매인	도림동	629번지 1호 도림주공상가 104호	03-08-19
15	대영할인마트	일반소매인	구월동	3번지 76호	03-08-19
16	선경슈퍼	일반소매인	간석동	154번지 3호	03-08-19
17	동영구내식당	일반소매인	고잔동	682번지 16호 18블럭17롯데	03-08-19
18	청운유류	일반소매인	간석동	37번지 31호 상우주택 101호	03-08-22
19	충남슈퍼	일반소매인	간석동	86번지 1호	03-08-26
20	구내매점	일반소매인	고잔동	706번지 5호 135블럭12롯데	03-08-27
21	프랜즈	일반소매인	구월동	1264번지 73호 서평빌딩102호	03-08-28
22	성신	일반소매인	고잔동	698번지 3호 127블럭4롯데	03-08-28
23	대원슈퍼	일반소매인	구월동	1276번지 1호	03-08-29
24	만수소비자마트	구내소매인	만수동	5번지 332호	03-09-02
25	L할인마트	일반소매인	간석동	118번지 4호	03-09-03
26	원마트	일반소매인	논현동	557번지 5호	03-09-03
27	탑포인트간석2호점	일반소매인	간석동	508번지 158호	03-09-04
28	정미마트	일반소매인	만수동	111번지 334호	03-09-04
29	삼미슈퍼	일반소매인	구월동	1303번지 20호	03-09-08
30	신세대마트	일반소매인	간석동	135번지 7호	03-09-08
31	진선소비자유류	구내소매인	구월동	276번지 1호	03-09-08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25호

소유사실확인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운연동 중로3-18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소유사실확인원에 따른 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 9.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편입대상 지장물의 지번 :

운연동 51, 69-3, 294-1, 294-2, 293-1, 294-1

2. 편입대상지장물 및 정당권리자의 현황 : 별첨

3. 관계공부 열람장소 : 남동구청 건설과(건설행정팀)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3. 9. 16 - 10. 15

5. 이의신청 방법 :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2003. 10. 15일까지) 증빙서류 첨부 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지 장 물 조 서

운연동 53번지(중로3-184호선)부근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건물면적(M²)			층 별	구 조	용 도	소 유 자		비 고
	동명	지 번	전 체	편 입	잔 여				성 명	주 소	
1	운연동	51		0.2m			적벽돌담장		김 순 철	남동구 운연동 52	
2	"	69-3		5.9m			목 책		배 상 원	서울 강동구 암사동 483-6	
3	"	294-1		101㎡			외파이프 비닐	비닐하우스	서 진 화	남동구 운연동 294-1	
4	"	294-2	130.13	8.08	122.05		철골,천막	공장	김준영	남동구 운연동 254-1	
				1.44			목조,철판	화장실			
				36.9m			합석담장				
							호이스트 1식				
							사령기 1식				
							밴드소				
							컴퓨터모형절단기				
							철관지재				
5	운연동	293-1	251.42	23.40	228.02		목조,합석,스레트	공장	이 수 영	남동구 운연동 293-1	
			8.28	8.28	0		목조스레트	창고			
				5.6m			철조합석문				
6	운연동	294-1	180.00	6.05	173.95		외파이프 천막	공장	신 병 진	남동구 운연동 294-1	
				10.1m			합석담장				
							대차 1식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28호

분묘개장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치 않
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처리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 분묘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333번지(39블럭5롯트)
2. 분묘기수 : 총1기
3. 개장사유 :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신속추진
4. 공고기간 : 2003. 9. 19. ~ 2003. 12. 19. (3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6. 개장후 안치장소(납골당) : 인천광역시부평공설묘지또는기타납골당
7. 신고처 및 문의처
 - 인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664)
 - 인천 남동구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32-453-2384)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제적
등본, 족보, 묘지신고증등을 구비하여 신고
9. 유의사항 : 연고가 있는 분묘는 신고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시행자가 임의개장
하겠으며 분묘기수 이외의 누락된 분묘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중 신고가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처리하겠습니다.

2003. 9. 1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보 상 액 산 정 조 서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종류	구 조	규격(㎡)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논현동	337-15	가옥	브럭기와	59.09	김사남	남동구 논현동 337-15	
			창고	브럭스레트	6.00			
			가추	목조스레트	3.70			
			화장실	브럭스레트	4.00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32호

노상적치물등의보관및처리에관한공고

우리구 관내 도로를 무단점용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노상적치물
에 대하여 도로법 제54조7(行政代執行의 適用特例)에 의거 대집행하고, 대집행시 수거
된 적치물을 동법시행령 제29조의5(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등) 제2항에 의거 공고하
오니, 해당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리자가 아래 공고기간내에 동시행령 제29조의6
에 의한 적치물등의 반환을 요구시 동법 제86조의2(過怠料)에 의거 과태료부과 후 반
환토록 하겠으며, 아래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동법시행령 제29조의7(미반환적치물등의 귀속)에 의거 우리구에 귀속 처리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9.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3년 9월 17일 ~ 2003년 9월 30일(14일간)
도로법시행규칙제29조의2(적치물의관리등)2항
2. 적치물 귀속 처리일 : 2003년 9월 30일이후부터 3개월경과후
3. 적치물 귀속 처리내용 : 폐기처리
4. 적치물 보관 및 처리대장 : “붙임 참조”

적치물 보관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	물건명	수량	보관 년월일	보관장소	위반(적치)장소	취급자	비고
1	파라솔 1 의자 4 테이블 1	6	2003. 07.12	간석동창고	남촌농협앞	한상호	도로무 단점용
2	그림	2	2003. 07.14	"	감석동 현대홈타 운앞	"	"
3	탁자2 의자8	10	2003. 07.23	"	구월1동 긴자앞 오드비어	"	"
4	탁자2 의자8	10	2003. 07.23	"	구월1동 다이아 나뒤 M.B	"	"
5	천막3쪽 의자37 탁자1 파라솔1	42	2003. 07.24	"	구월1동킴스클럽 뒤 차량노점	"	"
6	포장손수레	1	2003. 07.25	"	만수동정수장 주변	"	"
7	포장손수레 가스통2	3	2003. 07.29	"	간석4동현대아파 트앞	"	"
8	의류	10	2003. 07.26	"	남촌동남촌농협 주변	"	"
9	의류	39	2003. 07.26	"	남촌동남촌농협 주변	"	"
10	포장손수레 가스통2	3	2003. 08.07	"	간석3동63-11대 림하이츠빌라앞	"	"
11	포장손수레	1	2003. 08.08	"	만수6동사무소뒤 공원	"	"
12	파라솔1 평상1 탁자1,의자3	6	2003. 08.21	"	간석4동229-2 앞	"	"
13			2003.	이 하	여 백	"	"

※ 적치물 귀속처리일 : 공고일 이후부터 3개월경과후 폐기처분함.